

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207437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 2016. 9. 22.

판결 선고 2016. 10. 27.

##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757,537원 및 그 중 363,426,907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7. 1.자 매매예약과, 2015. 7. 27.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1. 접수 제154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와 같은 등기국 2015. 9. 22. 접수 제2273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18억 원, 보증기한 2017. 11. 6.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 회사에게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한 동안 소외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2015. 9. 4.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1. 2. 소외 은행에 363,490,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11. 2. 피고 회사로부터 63,12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 363,426,907원(= 363,490,027원 - 63,12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20원(= 63,120원 × 1일/365일 × 0.12, 원단위 이하 버림)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1,330,610원을 지출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 이후 2015. 7. 1.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154862호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이어서 2015. 7. 27.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C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국 2015. 9. 22. 접수 제2273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 단

###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364,757,537원(= 대위변제 잔금 363,426,907원 + 확정손해금 20원 + 법적절차비용 1,330,6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금 363,426,907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1. 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8.까지는 원고 소정의 위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비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취소채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피고 회사의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지목하는 피고 B,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당시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구미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당시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의 가액은 1억 1,900만 원 정도였고,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83,008,095원, 대구한 의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00,000,000원,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 원금 36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 총액은 합계 1,143,008,095원(= 83,008,095원 + 700,000,000원 + 360,000,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B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당시 채무가 재산을 1,024,008,095원(= 1,143,008,095원 - 119,000,000원)이나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와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한 다음, 이에 기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들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2015. 7. 1.자 매매예약 및 2015. 7. 27.자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5. 7. 1.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5.7. 27.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 당시 피고가 인수한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공장사정이 어려워져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들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5. 7. 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1억 1,300만원으로 정하되, 기존의 피담보대출금 8,300만 원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 113,000,000원 - 83,000,000원 - 5,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 C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잔금을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 회사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 B는 매매대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인 이 사건 계약들은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계약들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로부터 총 매매가격 1억 1,300만 원에 정상적으로 매수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물랐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것인데, 을다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호신, 판사 서희경, 판사 임세준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도로명주소]

대구 수성구 H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경량철골)

지하2층 지상9층 아파트, 업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지2층 부대시설(계단실 및 복도, 펌프실, 전기실, 주차장) 1570.226㎡

지1층 부대시설(계단실 및 복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1669.286㎡

1층 부대시설 118.09㎡

2층 오피스텔(19호) 1266.1483㎡

3층 아파트(24세대) 1128.3345㎡

4층 아파트(25세대) 1128.3065㎡

5층 아파트(25세대) 1128.3065㎡

6층 아파트(25세대) 1128.3065㎡

7층 아파트(25세대) 1128.3065㎡

8층 아파트(25세대) 1128.3065㎡

9층 아파트(13세대) 706.04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수성구 F 대 1865.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18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9.95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865.1분의 9.7614. 끝.